

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안명옥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8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05. 4. 21.

발 의 자 : 안명옥 · 김재경 · 이윤성
권오을 · 이해봉 · 고진화
전여옥 · 고경화 · 박재완
김애실 · 맹형규 · 조경태
최재성 · 정병국 · 문학진
유승민 · 신중식 · 서혜석
엄호성 · 임태희 · 배일도
이인기 · 유정복 · 이계진
이주호 의원(25인)

제안이유

일제하 일본군위안부는 일본 제국주의가 개입하여 아시아의 여성을 조직적으로 강제연행·납치하여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든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잔악한 범죄행위임. 이와 같은 인권유린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진상을 규명함과 동시에 올바른 역사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. 그러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국외거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여전히 지원 및 범위 등에 대한 법

적 근거의 미비와 정부의 미온적 대처 때문에 육체적·정신적 고통과 함께 어려운 경제적 처지에 놓인 채 살아가고 있음. 특히 국외거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과 처지는 더 없이 열악한 반면,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안타까운 실정임. 따라서 국가의 지원대상 범위에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어렵게 살아가는 국외거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까지 포함시키고자 함. 나아가 주변 피해국들과 연대하여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국제교류 및 공동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 또한 국가가 이들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해 진상규명·배상·올바른 역사교육 등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명시함.

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의 목적을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으로 하며, 적용대상자를 일제에 의하여 강제연행되어 현지에서 귀환하지 못한 국외거주 일본군위안부로 확대함(안 제1조, 제2조, 제6조).
- 나.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지원내용에서 간병인 지원을 추가함(안 제4조).
- 다.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국제교류 및 공동사업을 실시하도록 함(안 제11조).
- 라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외거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지원에

관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(안 제11조의2).

마. 국가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하여 진상규명·배상·올바른 역사교육 등에 대해 노력하도록 함(안 제15조).

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 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 관한법률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 관
한법률”을 “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
사업 등에 관한 법률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일본군위안부에 관한”을 “일본군위안부의 명예회복과 진상
규명을 위한”으로, “생활안정”을 “생활안정과 복지증진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일본군위안부”를 “일본군위안부 피해자”로 하고, 같은
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“국외거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”라 함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
중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하지 못한 채 외국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
다.

제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.

4. 간병인 지원

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간병인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하며, 간병인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국외거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

제11조제1항 중 “수행할 수 있다”를 “수행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5호(종전의 제4호) 중 “제3호”를 “제4호”로 한다.

4.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국외거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지원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외거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의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적회복 및 고국방문, 생활안정지원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(국가의 의무) ①국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의 명예 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하여 진상규명·배상·올바른 역사교육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②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 관한 법률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법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·지원하고 <u>일본군위안부에 관한 기념사업</u>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<u>생활안정</u>을 기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<u>일본군위안부</u>”라 함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성적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.</p> <p>2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<u>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<u>일본군위안부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</u> ----- <u>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<u>일본군위안부 피해자</u>”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“<u>국외거주 일본군위안부 피해</u></p>

第4條(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) ①국가는 생활안정 지원대상자에게 다음各號의 지원을 행한다.

- 1. ~ 3. (생략)

<신설>

- ②·③ (생략)

<신설>

第6條(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심의위원회) ① 다음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女性部에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심의위원회

자”라 함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하지 못한 채 외국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.

第4條(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) ①-----

-----.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간병인 지원

- ②·③ (현행과 같음)

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간병인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하며, 간병인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第6條(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심의위원회) ①

를 둔다.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5. (생략)

제11조(기념사업 등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4.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

② (생략)

<신설>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국외거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

5.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기념사업 등) ①-----

-----수행하여야 한다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

5.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1조의2(국외거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외거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의한 지원에 관한 사

<신 설>

항은 국적회복 및 고국방문, 생활안정지원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5조(국가의 의무) ①국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의 명예 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하여 진상규명·배상·올바른 역사교육 등에 대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②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일본군위안부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예 산 명 세 서

1. 총 소요예산 추계액 : 연간 10억원

2. 연간 운영예산 추계 세부내역

○ 간병인 지원 소요예산 (예산액)

- 118명×60%×500천원×12개월 = 4억2천만원

※ '04년 생활실태조사에 의거 국내거주 피해자의 60%를 간병인
수요자로 산정

○ 국외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소요예산(예상액)

- 국적회복예상자 10명

· 일시금 : 43,000천원×10명 = 4억3천만원

· 월지원금 : 700천원×10명×8개월 = 5천6백만원

- 국외거주 피해자 실태조사 및 국적회복 지원사업 : 4천만원

○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: 5천만원